

#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

2018년 개정사항은  
붉은색으로 표시

- 연말정산 시기: 계속근무자 ⇨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(소득세법 § 134, § 135 원천징수시기 특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)  
※ 2019. 3.11.까지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신청(반기 납 신고자도 가능)
-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: 근로·사업·퇴직소득, **종교인소득(3월11일)**, 그 외 (2월 말일)

## 총 급여액 (연간근로소득-비과세소득)

총급여액 500만원 이하	총급여액의 70%
500만원 초과 ~ 1,500만원 이하	350만원 + 500만원 초과액의 40%
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	750만원 + 1,500만원 초과액의 15%
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액의 5%
1억원 초과	1,475만원 + 1억원 초과액의 2%

(-) 근로소득공제

## 근로소득금액 (총급여액-근로소득공제)

<b>기본공제</b> (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로자 본인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,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</li> <li>직계존속: 만 60세 이상(1958.12.31.이전 생)</li> <li>직계비속·동거입양자: 만 20세 이하(1998.1.1.이후 생)</li> <li>형제자매: 만 20세 이하, 만 60세 이상</li> </ul>
<b>추가공제</b> (경로·장애인·부녀자·한부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로우대공제: 만 70세 이상(1948.12.31.이전 생) 1인당 <b>100만원</b>, 장애인공제: 1인당 <b>200만원</b></li> <li>부녀자: <b>50만원</b>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), 한부모공제: 100만원(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우선적용)</li> </ul>

(-) 인적공제

(-) 연금보험료공제

<b>연금보험료공제</b>	국민·공무원·군인·사립학교교직원·별정우체국연금: 본인 부담액 전액공제
----------------	--

(-) 특별소득공제

<b>보험료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건강보험료·고용보험료·노인장기요양보험료: 본인 부담액 전액공제</li> </ul>
<b>주택자금</b> 공제산식: ((㉠×40%) + 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주택마련저축납입액, 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, 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</li> <li>한도: ㉠+㉡ = 300만원</li> <li>㉠+㉡+㉢ = 1800만원·1500만원·500만원·300만원</li> <li>* ㉢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, ※ 뒷면 「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」 참조</li> </ul>

(-) 그 밖의 소득공제

<b>개인연금저축</b>	(2000.12.31.이전 가입) 공제액: 연간납입금액의 40% (한도: 72만원)
<b>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(한도: 500만원·300만원·200만원)</li> <li>총 급여 7천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</li> </ul>
<b>주택마련저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약저축·주택청약종합저축(年 240만원 이하, 근로자주택마련저축(月 15만원 이하)</li> <li>공제액: 납입금액의 40%(한도: 상거 주택자금공제 한도 참조)</li> </ul>
<b>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투자액의 10%를 투자일로부터 2년내 과세기간 선택 공제(한도: 종합소득금액 50%)</li> <li><b>벤처기업 직접투자액 3천만원 이하 100%,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%, 5천만원 초과 30%</b></li> </ul>
<b>신용카드</b> (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도서공연비 공제추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제율: 신용카드 일반 15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, 현금영수증·작별카드, 도서·공연비 30%</li> <li>한도: MIN(총급여액 20%, 300만원)+전통시장(100만원)+대중교통(100만원)+도서공연비(100만원)</li> <li>* 총급여액 7천만원 ~ 1.2억이하자(250만원), 1.2억 초과자(200만원)</li> </ul>
<b>우리사주조합 출연금</b>	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(한도: 400만원, <b>벤처 1,500만원</b> )
<b>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</b>	임금삭감액(직전 임금총액-당해 임금총액)의 50%공제 (한도: 1,000만원)
<b>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</b>	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%공제(한도: 240만원)

(-) 세액감면

<b>조세조약상 감면</b>	원어민교사,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충족 시 면세 혜택
<b>중소기업취업자 감면</b> (청년 90%, 청년 외 7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소기업에 취업하는 <b>청년</b>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·<b>5년</b>, 150만원 한도 감면</li> <li>대상: 청년(만 15세~34세), 청년 외(60세 이상자, 장애인, 동일직장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)</li> </ul>
<b>외국인기술자 감면</b>	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내 (50% 세액감면)

(-) 세액공제

<b>근로소득세액공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%, 130만원 초과분 30%공제</li> <li>한도: 총급여액 3천3백이하(74만원), 7천만원 이하(66만원), 7천만원 초과(50만원)</li> </ul>
<b>자녀세액공제</b> (손자녀 공제 적용불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녀 1명(15만원), 자녀 2명(30만원), 자녀 3명 이상: 30만원+2명 초과 1인당 30만원</li> <li>출생·입양 세액공제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</li> </ul>
<b>연금계좌</b> (공제율 12%·15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금저축계좌 납입액(한도 400만원)·퇴직연금계좌 납입액(한도: 연금저축액포함 700만원)</li> <li>* 한도 차등적용: 총급여액 1.2억원,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한도(300만원)</li> </ul>
<b>특별세액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보험료</b>(공제율 12%, 15%): 보장성보험료(저축성 제외) 12%(한도 100만원),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5%(한도 100만원)</li> <li><b>의료비</b>: ㉠ 본인·65세 이상자·장애인·난임시술비(20%), <b>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</b>, ㉡ '㉠' 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- 총급여액×3%(한도 700만원)</li> <li>* 단, ㉡의 금액 &lt; 총급여액×3%인 경우, 그 미달금액을 ㉠에서 차감 후 15%·20% 적용</li> <li><b>교육비</b>(공제율 15%): 본인: 전액(대학원 포함), 대학생: 1명당 900만원(한도(대학원제외)), 취학전아동·초·중·고생: 1명당 300만원(한도(세험학습비 30만원까지 포함)), 장애인재활교육 목적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(직계존속포함)</li> <li><b>기부금</b>: 정치자금기부금: 10만원 이하(100/110), 10만원 초과 15%(3천만원 초과 25%), 법정·지정기부금·우리사주조합기부금: 15%(2천만원 초과 30%), 한도: 법정·정치자금 기부금(전액), 우리사주조합기부금: 근로소득·정치·법정기부금×30% 지정기부금 <b>종교</b>외(㉢×30%), <b>종교</b>(㉢×10%+MIN(㉢×20%, 종교외단체 기부액))</li> <li>* ㉢(근로소득금액-정치자금기부금-법정기부금-우리사주조합기부금)</li> </ul>
<b>납세조합공제</b>	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% 공제
<b>주택자금차입금이자</b>	'95.11.1.~'97.12.31.기간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%, 농특세 과세
<b>외국납부세액</b>	한도: 근로소득 산출세액 × (국외근로소득금액 / 근로소득금액)
<b>월세액</b> (공제율 10·12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소지 주택 등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의 10%*공제(한도 75만원)</li> <li>*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자는 12% 공제(한도 90만원)</li> </ul>

표준세액공제 (13만원)  
특별소득공제·특별세액공제·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

결정세액 (-) 기납부세액 납부 또는 환급세액

※ 본 자료는 세법 상 공제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및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